

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05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. 1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2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2. 2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「서민층 주거안정대책」 및 「기업의 지방이전 시 각종 지원방안」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.

3. 주요골자
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“5세대이상”에서 “2세대이상”으로 개정 (안 제12조)
- 과밀억제 권역(수도권과 그 연접지역)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고성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말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50%을 경감한다. (안 제24조의 5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상남도 세정 13415-11108('99.11.12)호 및 세정 13415-10935 ('99.10.2) 표준안과 관련 과밀억제 권역(수도권과 그 연접구역)내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함은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기하고

-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방이전 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“5세대이상”에서 “2세대이상”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
-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